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3. 7. 18.(화)~7. 20.(목)(3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7. 18.(화)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1.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7. 19.(수) 10:00	본회의 (2차)	1. 조례안 등 심의	의원 회의실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7. 20.(목) 10:00	본회의 (3차)	1.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토론 및 의결)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두천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수 : 3명

나. 임 기 : 4년

다. 후보자 명단

연 번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 고(자격)
1	박동룡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겸임교수	4급이상 공무원 퇴직 기술사(토목시공분야)
2	김상영	재단법인 원화 중앙연구소 소장	교수(사회복지분야)
3	김유종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국장	4급이상 공무원 재직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하여 동두천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개 요

○ 목 적 : 동두천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수 : 3명

○ 임 기 : 4년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추천단에서 심사 및 후보자 결정 → **동두천시의회 동의** → 동두천시장이 위촉

○ 자 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직　　무

- 동두천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위촉 후보 명단

연 번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 고(자격)
1	박동룡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겸임교수	4급이상 공무원 퇴직 기술사(토목시공분야)
2	김상영	재단법인 원화 중앙연구소 소장	교수(사회복지분야)
3	김유종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국장	4급이상 공무원 재직

□ 추진현황

○ ‘22. 12. 30.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3. 4. 1.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3. 4. 10.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천단 구성

※ 추천단은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 역할

○ ‘23. 4. 11. ~ 5. 1. : 위원 공개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3. 5. 15. ~ 19. : 지원서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 ‘23. 5. 2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심사 및 후보자 선정

참고1] 후보자 인적사항

인적사항		
	연번	1
	성명	박 동 룡
	생년월일	1960.11.22
	거주지	서울시 서초구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 고
	18 년 8 월 ~ 21 년 8 월	동양대학교	건설공학	박사	
	12 년 3 월 ~ 14 년 2 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건설공학	석사	
	79 년 3 월 ~ 86 년 2 월	경희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76 년 3 월 ~ 79 년 2 월	고려고등학교	인문계	-	

주요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겸임교수	-	2022.3.~현재	
	㈜도화엔지니어링	교통부문	부사장	설계관리	2022.1.~현재	
	경화엔지니어링	철도부	부사장	설계관리	2019.7~2022.1.	
	서울터널(주)	사업본부	부사장	사업관리	2019.1.~2019.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이사관	사업관리	2016.7.~2018.12.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외	7급~4급	사업관리	1992.3.~2016.7.	

자격 및 면허	자격증명(등급)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비고
	철도기술사	2017. 8.11	한국산업인력공단	
	토목시공기술사	1998. 7.27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사업관리사	2018. 2. 1	기술사회,CM협회	
	행정사	2017.12. 6	행정안전부	

인적사항		
	연 번	2
	성 명	김 상 영
	생 년 월 일	1964. 11. 25.
	거주지	경기도 포천시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99 년 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복지	수료	
	년 월 ~ ‘89 년 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	석사	
	년 월 ~ ‘85 년 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	학사	
	년 월 ~ 년 월				

주요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회복지	부교수	사회복지 학개론	2005~2020	16년
	KBS(여의도)	사회부	PD	추적60분	1999~2005	6년
	KBS월드이벤트	교양제작	부사장(겸직)	광고홍보/ 기획	2003~2018	15년

자격 및 면허	자격증명(등급)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비고

인적사항		
	연번	3
	성명	김 유 종
	생년월일	1964. 3. 21.
	거주지	경기도 동두천시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 고
	80 년 3 월 ~ 83 년 2 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주요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동두천시청				1988.7.23.~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과장	부서총괄	2020.7.1.~2021.12.31.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총괄	2022.1.1.~2022.12.31.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2023.1.1.~현재	

자격 및 면허	자격증명(등급)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비고
	전기공사기능사	1982.5.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기존 명칭인 ‘시민의 장’이라는 제명을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분야를 정비하여 수상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의 제명을 ‘시민의 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변경함.

나. 수상 부문의 명칭을 변경함

- 애향봉사 → 사회봉사 (안 제2조)
- 향토발전 → 지역경제 (안 제2조)

다. 심사위원회 내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심사위원의 수를 10명으로 축소

- 부문별 심사위원회 폐지 (안 제4조제5항)
- 심사위원 인원의 축소 (안 제4조제2항)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의 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동두천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부문
2. 지역경제부문
3. 효행선행부문
4. 문화예술부문
5. 체육진흥부문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

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 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망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추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동두천시민(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대상 수여)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동두천시 시민의 장을 수상한 사람은 동두천시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본다.

붙임 1 **현행조례**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동두천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장) 동두천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봉사장
2. 향토발전장
3. 효행선행장
4. 문화예술장
5. 체육진흥장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수여대상자는 추천 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제2조 각 호의 분야 중 뚜렷한 공적을 쌓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의 장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망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사위원회는 전체심사위원회와 제2조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 중 각 3명을 시장이 지정하며,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된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의 합의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민의 장 수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동두천시민(만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전체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전체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합의로 결정한다.

②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전체심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수상자는 전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하여 확정한다.

제8조(시민의 장 수여) (시민의 장 수여)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의2(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추서) 시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한다.

제12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7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제19232호, 20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의거 일몰이 도래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삭제(안 제8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 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9.]

붙임 2 **현행조례**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5. 10.] (일부개정) 2022. 5. 10. 조례 제2281호

경기도 동두천시(세무과)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두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

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 5. 20.,2020.6.1., 2022. 5. 1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동<2020.6.1.>]<개정 2019. 5. 20.>

④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20. 6.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1.>

제3조삭제 <2021. 12. 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11.2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특삼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1. 27., 2022. 5. 1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2. 5. 10.>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신설2020.6.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6.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삭제<2018. 11. 27.>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20.6.1.>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

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2018. 11. 27.>법 제92조의2제1항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11.27., 2022. 5. 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개정 2018. 11. 27., 2022. 5. 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 12. 31.>

제12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6. 1.>

제12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1.>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u>**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u>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과) : 취득 및 처분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29,962.6㎡ / 61,954백만 원	35,237.45㎡(증 5,274.85) / 64,758.3백만 원(증 2,804.3)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과)	-	[취득] : 토지+건물(신규 추가) · 면적 : 7,525.76㎡ · 금액 : 4,822.3백만 원 [처분] : 건물(신규 추가) · 면적 : 2,250.91㎡ · 금액 : 2,018백만 원

2023년도 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구 분			당초(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증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5	16,463.8	15,185	6	21,738.65	17,989.3	1	5,274.85	2,804.3	
		건물	6	14,374.81	47,374	7	16,625.72	49,392	1	2,250.91	2,018	
		기타										
	1.매 입	토지	5	16,463.8	15,185	6	21,738.65	17,989.3	1	5,274.85	2,804.3	신규취득
		건물	1	670.81	-	2	2,921.72	2,018	1	2,250.91	2,018	신규취득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5	13,704	47,374	5	13,704	47,374				신증축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1	876.01	605	2	3,126.92	2,623	1	2,250.91	2,018	**철거**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1	876.01	605	2	3,126.92	2,623	1	2,250.91	2,018	철거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1건(58필지)	5,274.85	2,804.3			
	건물	1건(34동)	2,250.91	2,018			
1	토지	생연동 487-40 외 57필지	5,274.85	2,804.3	2023.12. ~2024.6.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금회분
	건물	생연동 487-40 외 33동	2,250.91	2,018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소관 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	-	-				
	건물	1건(34동)	2,250.91	2,018				
1	건물	생연동 487-40 외 33동	2,250.91	2,018	2024.12. (매입 후 철거)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축과	금회분

□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건축과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동두천시 생연동 490-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2026.(4년간)

❍ 사업규모 : 지상공원(약4,800㎡) 및 주차장(지하주차장 약200면)

❍ 사 업 비 : 25,000백만 원(국비 15,000 도비 4,000 시비 6,000)

※ 해당 사업은 총 5개년도 사업으로 '23년 실시설계 용역 후 '24년 공사 착수 전 정확한 공사비 산출 가능

❍ 매입금액 : 7,065백만 원(국비 7,065백만 원)

- (건물) 2,018백만 원 ※시가표준액 기준(협의취득 예정)
- (부지) 5,047백만 원 ※2,804백만원(공시지가)x1.8배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공원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방법	비고
계		토지58필지 건물34동	7,525.76	4,822.3	매입(협의)	
1	토지	생연동 487-40	125	70	매입(협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2	건물		38.18	59		

3	토지	생연동 487-39	252	178		
4	토지	생연동 487-68	71	10		
5	토지	생연동 487-9	134	98		
6	건물		44.07	73		
7	토지	생연동 487-11	98	69		
8	건물		49.16	50		
9	토지	생연동 487-12	99	70	매입(협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10	건물		182.84	61		
11	토지	생연동 487-47	11	1		
12	토지	생연동 487-70	24	3		
13	토지	생연동 487-37	15	7		
14	토지	생연동 487-36	102	76		
15	토지	생연동 487-15	151	163		
16	건물		311.09	198		
17	토지	생연동 622-27	47	28		
18	토지	생연동 624-10	64	32		
19	토지	생연동 624-20	76	33		
20	건물		48.75	35		
21	토지	생연동 624-5	142	62		
22	건물		24.03	63		
23	토지	생연동 624-19	46	22		
24	토지	생연동 624-22	93	45		
25	건물		133.98	89		
26	토지	생연동 624-71	8	1		
27	토지	생연동 624-70	5	2		
28	토지	생연동 624-38	194	100		
29	토지	생연동 624-21	116	52		

30	건물		39.01	53		
31	토지	생연동 624-23	106	48		
32	건물		38.91	50		
33	토지	생연동 624-7	107	47		
34	건물		56.33	52		
35	토지	생연동 624-45	2	0.2		
36	토지	생연동 624-6	136	60		
37	건물		43.87	61		
38	토지	생연동 624-25	112	57		
39	건물		55	29		
40	토지	생연동 624-78	67	34		
41	토지	생연동 624-26	108	56	매입(협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42	건물		61.39	57		
43	토지	생연동 624-29	91	43		
44	건물		59.4	46		
45	토지	생연동 624-30	94	50		
46	건물		53.26	49		
47	토지	생연동 624-32	139	64		
48	건물		54.15	68		
49	토지	생연동 487-35	92	42		
50	건물		84.08	63		
51	토지	생연동 487-14	93	42		
52	건물		30.2	45		
53	토지	생연동 624-31	149	67		
54	건물		62.21	72		
55	토지	생연동 487-13	159	73		
56	건물		52.83	77		
57	토지	생연동 624-28	165	73		
58	건물		71.01	75		

59	토지	생연동 624-27	172	89		
60	건물		66.45	89		
61	토지	생연동 624-17	132	67		
62	건물		46.11	62		
63	토지	생연동 487-46	89	41		
64	건물		29.19	43		
65	토지	생연동 624-16	162	85		
66	건물		97.2	102		
67	토지	생연동 624-40	46	8		
68	토지	생연동 487-8	179	92		
69	건물		106.32	89		
70	토지	생연동 622-25	53	30		
71	토지	생연동 622-24	22.694	12		
72	토지	생연동 622-26	128	88		
73	건물		62.81	39		
74	토지	생연동 487-73	44	25		
75	토지	생연동 487-41	227	128		
76	토지	생연동 624-12	1	0.1		
77	토지	생연동 624-43	66	30	매입(협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78	건물		19.87	29		
79	토지	생연동 624-13	17	9		
80	토지	생연동 624-14	48	23		
81	건물		29.52	23		
82	토지	생연동 624-57	67.16	34		
83	토지	생연동 624-15	50	25		
84	건물		49.59	2		
85	토지	생연동 624-2	116	59		

86	건물		56.2	56		
87	토지	생연동 624-41	30	15		
88	건물		56	17		
89	토지	생연동 625-10	89	44		
90	건물		37.9	42		
91	토지	생연동 625-6	20	10		
92	토지	생연동 625-7	23	12		

❍ 처분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처분방법	비고
계	토지	해	당	없	음	
	건물	생연동 487-40외 33동	2,250.91	2,018	매입 후 철거	
1	건물	생연동 487-40외 33동	2,250.91	2,018	매입 후 철거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항 정비(안 제17조, 안 제5장, 안 제30조)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제2항제8호, 안 제14조)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장, 안 제30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총 사업비의 90%”를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총 사업비의 70%”를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총 사업비의 50%”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총 사업비의 30%”를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4,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및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지원기준) ① ----------.
1. 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1.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2.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	2. ---------- 총 사업비

비의 7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한다.	의 70% 이내. ---------- ---------- --.
3. 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5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3. ----------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
4.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3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한다.	4. ----------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4,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② (생 략)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	④ ---- 제3항---------- ----------

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

	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현행조례**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1. 6. 30.]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96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동두천시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은 동두천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유지・보수
6.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7.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 4. 5.>
8.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4조(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한다.
3. 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5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4.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30%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5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건축사 또는 건축·토목분야 기술사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
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① 관리주체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제1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 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21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7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 한옥의 등록 방법,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및 한옥 대장 등 (안 제5조～제8조)

○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안 제9조)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10조)

○ 지원시기(안 제11조)

○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2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한옥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등

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 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한옥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제9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건축 등: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한옥의 소유자 등은 동일 한옥에 대하여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등: 20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 10년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원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양도·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	
	구조	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	수선 등 예정일		
	[ ] 대수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 ] 수 선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그 외
	[ ] 신 축 [ ] 개 축 ([ ]전체 [ ]부분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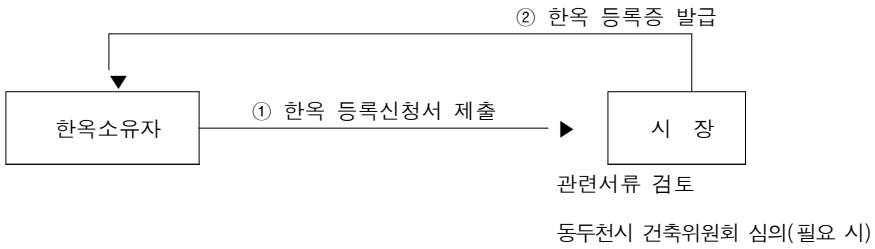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한 옥 등 록 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소 유 자 등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등록 한옥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인)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대장

<table>
<tr><td>등록번호</td><td colspan="6"></td></tr>
<tr><td>등 록 일</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건 축 주</td><td>성
명</td><td></td><td>생년월
일</td><td></td><td>성
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 :
)</td></tr>
<tr><td>대지위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건축물 현황</td><td colspan="6">※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td></tr>
<tr><td>대지면적</td><td colspan="2">㎡</td><td>연면적</td><td colspan="2">㎡</td></tr>
<tr><td>층 수</td><td colspan="2">지하 층, 지상 층</td><td>용
도</td><td colspan="2"></td></tr>
<tr><td>구 조</td><td colspan="2"></td><td>건 립
일</td><td colspan="2"></td></tr>
<tr><td>향후 수선 등
계획</td><td colspan="2"></td><td>보조
지원 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현 황 사 진(전·후면)</td></tr>
<tr><td colspan="7"></td></tr>
</table>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	신청내용	[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금액	총공사비	원
		보 조 금	원 (공사비의 %)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면적 : ㎡)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폐율	%	용 적 률	%
	용 도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 업 장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일		준공일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준공검사자	검사일	검사(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선등 구분	[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7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			등록일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 사유	[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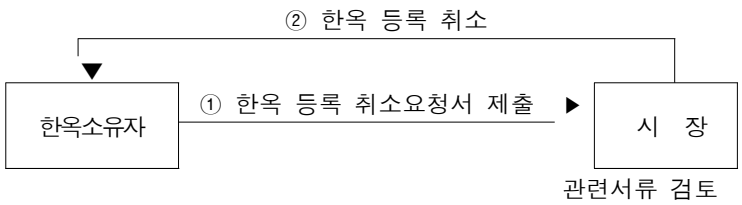

■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별지 제8호서식]

한옥 등록 변경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소 유 자 등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소유자 등)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 전 소유자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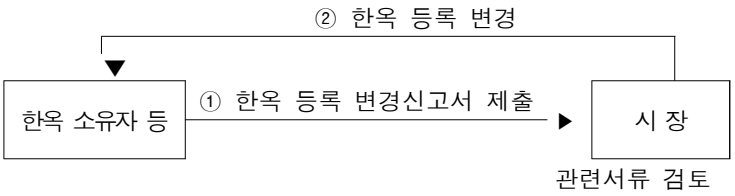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건축 계획서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다.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마.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05호, 2022. 11. 8.,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31, 2016. 7. 13.,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1., 2015.1.7.,2016. 7. 13., 2016.12.30., 2022. 11. 8.>

③ 위원의 임명·위촉·자격 기준은 영 제5조의5제4항, 제6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7.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3.7.31 개정>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31>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7.31, 2016. 7. 13.>

2. 삭제 <2021. 12. 31.>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3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5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넘어 건축허가변경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설계변경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7. 13., 2016.12.30.><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7., 2016.12.30.>

③ 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신설 2013.7.31.>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험 가입 (안 제3조)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

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

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

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2021. 7. 27.>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7.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붙임2 **전동보장기기 보험 지원 관련 현황**

기준일 : 2023. 6. 20.

순번	지자체명 (무작위순)	조례 명	제정일	비고
1	광역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5. 19., 제정	
2	남원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14., 제정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2020. 12. 11., 제정	
4	보령시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제정	
5	서산시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1. 31., 제정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0. 27., 제정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27., 제정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1. 10., 제정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1. 11. 4., 제정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5. 31., 제정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1. 7. 15., 제정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22., 제정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22., 제정	
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1. 14., 제정	
15	의정부시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5. 17., 제정	
16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4. 24., 제정	
17	하남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1. 11. 23., 제정	
18	괴산군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29., 제정	
19	군포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8. 12., 제정	
20	담양군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2. 28., 제정	

순번	지자체명 (무작위순)	조례 명	제정일	비고
21	보성군	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3. 20., 제정	
22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2023. 2. 8., 제정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4. 14., 제정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1. 9. 24., 제정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1. 11. 4., 제정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1. 10., 제정	
27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2. 20., 제정	
28	속초시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5. 12., 제정	
29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1. 15., 제정	
30	시흥시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4. 6., 제정	
31	안양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2. 10. 20., 제정	
32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3. 14., 제정	
33	장성군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2023. 4. 18., 제정	
34	진천군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2022. 10. 25., 제정	
35	화순군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 3. 2., 제정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임차차량운행의 비용지원 및 정산 등 (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별표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군단 305경비연대 43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동두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전문개정 2014. 1. 16.]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권영기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선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안 제2조)

○ 동두천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신설 (안 제3조제2항)

○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및 선임 방법 구체화 (안 제6조제1항)

○ 기타 기존 조례 오류 정비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 참고자료 : 붙임

○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를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가진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다만,시의회”를 “다만, 시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동두천시”를 “동두천시”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명한다”를 “설명하

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 의장”을 “시의회의장”으로 한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제8조 중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을 “검사기간 중”으로, “이에”를 “제1항의 검사일수에”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7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가진 사람 ---------- ---------- 3분의 1---------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	② ----------

내로 한다. 다만,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시의회----------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동두천시----------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 ---------- ---------- ----------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③ ---------- ---------- 시의회의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협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 ---------- ---------- ---------- ---------- ---------- ---------- -----.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 ---------- ----------. ----- ------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 ---------- ----------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검사기간 중---------- ---------- ---------- 제1항의 검사일수에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	제13조(지급기준) ----------

는 여비는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 ----------

----------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일 비	150,000원	
여 비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2 **현행 조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3., 2011.11.29., 2022.5. 10.>

제2조(위원의 정수)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2017. 1.31.>

②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하되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29>

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2011.11.29>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1.11.29., 2017. 7.3., 2022.5. 10.>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1.11.29.,2017. 7.3.>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② 삭제<2017. 7. 3.>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1.11.2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1.11.2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29., 2017. 1.3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 7. 3.>

제8조(검사협조)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11.29., 2017. 7.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11.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17. 7. 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6. 2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18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5 조례 제753호>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9 조례 제785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4. 1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9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경기도 및 경기도 내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6. 20.

지자체명 (무작위순)	조례명	위원 수	지급 금액	비 고
경기도	경기도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명	200,000원	수당
가평군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일비
고양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과천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5명 이하	150,000원	일비
광명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10명 이내	150,000원	일비
광주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일비
군포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명	150,000원	일비
김포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10명 이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10명 이하		
부천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5명 이하		
성남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일비
수원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00,000원	수당
시흥시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안산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안성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일비
안양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5명 이하	150,000원	일비
양주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5명 이내	150,000원	일비
양평군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수당
오산시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인 이상 5인 이하	150,000원	일비
용인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10명 이내	150,000원	일비
의왕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10명 이하		
의정부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10명 이내		
이천시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150,000원	수당

지자체명 (무작위순)	조례명	위원 수	지급 금액	비 고
파주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5명 이하	150,000원	일비
평택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인이내	200,000원	일비
포천시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인 이상 5인 이하	150,000원	일비
하남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00,000원	일비
화성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인	200,000원	일비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권영기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참고사항 : 붙임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를 각각 “월정수당, 여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

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 월정수당, 여비---------. ---------- ---------- ---------- 월정수당, 여비--------.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 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24호, 2022. 12. 30.,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사무과), 031-860-2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08.4.25, 2018.11.1.,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18. 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18. 11.1.>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삭제 < 2006.5.19>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5.19〉

② 삭제 <2006.5.19>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8, 2009.1.5, 2013. 12. 31, 2015. 12. 31. 2016.4.11.,2019.1.1.>

[전문개정 2007.11.30]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9.1.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1. 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5.19,2021. 12. 31.>

부칙 <1991. 4. 10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18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10. 5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4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2. 2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18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3 조례 제10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2004. 2. 9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0. 9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30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8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4. 25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8.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1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은경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지원과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5조～제6조)

○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실종 예방 사업 (안 제7조～제8조)

○ 실종 예방 지원 대상 (안 제9조)

○ 재정 지원 (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제12조)

○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참고사항 : 붙임**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및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 자립 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 활동·돌봄 지원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제7조(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현황 등 실태 조사

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종 예방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제4장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2 경기도 및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6. 20.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비 고
1	경기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6. 2. 24.	
2	가평군			
3	고양시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23.	
4	과천시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8. 2. 20.	
5	광명시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9.	
6	광주시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21. 1. 4.	
7	구리시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27.	
8	군포시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13.	
9	김포시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6. 8. 5.	
10	남양주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7.	
11	부천시			
12	성남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7. 7. 19.	
13	수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1. 9. 27.	
14	시흥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1.	
15	안산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8.	
16	안성시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4.	
17	안양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6. 24.	
18	양주시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9. 2. 25.	
19	양평군			
20	여주시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0.	
21	연천군			
22	오산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30.	
23	용인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2017. 9. 29. 2023. 4. 27.	실종 예방 조례 별도 제정
24	의왕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7.	
25	의정부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19.	
26	이천시			
27	파주시			
28	평택시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6.	
29	포천시			
30	하남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3.	
31	화성시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승호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 이유

○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시설·운영·장비 및 행사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 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안 제3조)

○ 표시의 내용 등 (안 제4조)

○ 비용 부담 (안 제6조)

○ 감독 및 평가 (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 참고 사항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시설·운영·장비 및 행사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지원 표시”란 공사, 시설, 물품 및 장비, 행사 및 축제 등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지판 부착 또는 표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또는 장비 겉면에 표시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4조(표시의 내용 등) ① 보조금 지원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

제5조(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① 보조금 지원 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

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보조금 지원 표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조(의무) ①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8조(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 지원 표시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시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1 **관계 법령 발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 9. 18.]

붙임2 **경기도 및 경기도 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6. 22.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20.07.15	
2	가평군	가평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6.07.25	
3	고양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5.01.09	
4	과천시			
5	광명시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22.12.26	
6	광주시			
7	구리시			
8	군포시			
9	김포시			
10	남양주시			
11	부천시			
12	성남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21.06.21	
13	수원시			
14	시흥시			
15	안산시			
16	안성시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6.05.17	
17	안양시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9.07.05	
18	양주시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9.12.30	
19	양평군			
20	여주시			
21	연천군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6.03.15	
22	오산시			
23	용인시			
24	의왕시			
25	의정부시			
26	이천시	이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7.10.13	
27	파주시			
28	평택시			
29	포천시			
30	하남시			
31	화성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21.07.30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두천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수 : 3명

○ 임 기 : 4년

○ 후보자 명단

연 번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 고(자격)
1	박동룡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겸임교수	4급이상 공무원 퇴직 기술사(토목시공분야)
2	김상영	재단법인 원화 중앙연구소 소장	교수(사회복지분야)
3	김유종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국장	4급이상 공무원 재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기존 명칭인 ‘시민의 장’이라는 제명을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분야를 정비하여 수상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의 제명을 ‘시민의 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변경함.

○ 수상 부문의 명칭을 변경함

- 애향봉사 → 사회봉사 (안 제2조)
- 향토발전 → 지역경제 (안 제2조)

○ 심사위원회 내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심사위원의 수를 10명으로 축소

- 부문별 심사위원회 폐지 (안 제4조제5항)
- 심사위원 인원의 축소 (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민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부문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고, 특히 기존 부문별 소위원회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체 위원회의 통합심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제19232호, 20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의거 일몰이 도래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삭제(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과) : 취득 및 처분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29,962.6㎡ / 61,954백만 원	35,237.45㎡(증 5,274.85) / 64,758.3백만 원(증 2,804.3)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과)	-	[취득] : 토지+건물(신규 추가) · 면적 : 7,525.76㎡ · 금액 : 4,822.3백만 원 [처분] : 건물(신규 추가) · 면적 : 2,250.91㎡ · 금액 : 2,018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계획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항 정비(안 제17조, 안 제5장, 안 제30조)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제2항제8호, 안 제14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장, 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 한옥의 등록 방법,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및 한옥 대장 등 (안 제5조～제8조)

○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안 제9조)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10조)

○ 지원시기(안 제11조)

○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존과 대중화를 위해 한옥의 신축 또는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황주룡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의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험 가입 (안 제3조)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또는 노인들의 전동보조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황주룡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임차차량운행의 비용지원 및 정산 등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생연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실제 상당수 예비군훈련대원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권영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선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안 제2조)

○ 동두천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신설 (안 제3조제2항)

○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및 선임 방법 구체화 (안 제6조제1항)

○ 기타 기존 조례 오류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면서 동시에「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 재정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권영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이은경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7. 18.

다. 상정일자 :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지원과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5조~제6조)
○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실종 예방 사업 (안 제7조~제8조)
○ 실종 예방 지원 대상 (안 제9조)
○ 재정 지원 (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제12조)
○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4. 17. 김승호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4. 18.

다. 상정일자 :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시설·운영·장비 및 행사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 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안 제3조)

○ 표시의 내용 등 (안 제4조)

○ 비용 부담 (안 제6조)

○ 감독 및 평가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행사, 축제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물, 장비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